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9월 20일, 강선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3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2024.11.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7차 국방위원회(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선영 의원)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군수품·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양여 외에도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대부기간을 최대 20년까지의 장기로 할 수 있으며,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례 규정이 없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무기체계의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의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고, 그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제3항 및 제32조의3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류승우)

□ 개정안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품 품질보증 및 시험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갱신을 위한 주기적인 행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 및 대부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개정안은 국·공유재산의 장기간 사용 및 대부를 허용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 수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장기 사용허가에 관한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장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개정안에서 영구시설물의 축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

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반환으로 인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고유의 공공목적 수행 장애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간주되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또한, 동법 제7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이 의제되고, 동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승인 및 통보가 있으면 건축허가·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등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부승찬)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등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